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21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김위상・박준태・권성동

임이자 • 우재준 • 서범수

성일종 • 구자근 • 김민전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난방공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해 왔음.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구'에 따르며, 초미세먼지 배출요인은 난방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등이 12%로 나타나, 열병합·석탄발전이나 자동차 외에도 미세먼지 배출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자동차 중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자동차 미세먼지는 2004년 대비 2019년 약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건설기계 미세먼지는 오히려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1.6%에 불과하나 직접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은 자동차와 유사하므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의 적극적인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31조 등).

법률 제 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주하거나 시행한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가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

중 그 규모가 제2항에 따른 기준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있 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주하거나 시행한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가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965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로 한다.

1의2. 제31조제3항·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건설기계 사용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 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	6
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	
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	
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	
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u>환경부령으로 정</u>
<u>등록된</u> 것을 말한다.	하는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
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	
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주하거나 시행한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 동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가 어 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 중 그 규모가 제2항에 따른 기준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할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법률 제1965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제49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 2. (생략)
- ③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발주하거나 시행한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 동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가 어 럽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법률 제1965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제4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31조제3항·제5항을 위 반하여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2.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 ⑤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환경부</u> • 징수한다.

------환경부장 <u>장관 또는 시·도지사</u>가 부과 <u>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u>